

제주지방법원 2021. 2. 19 선고 2020가단556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기탁

변론 종결 2021. 2. 9

판결 선고 2021. 2.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6,870,000원 및 그중 90,320,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26.부터,56,550,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29.부터,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7.

6.부터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2020. 6. 26.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여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로 합계 90,320,000원을, 2020. 6. 29. 피고 명의의 새마을금고연합회 계좌(D)로 56,550,000원을, 2020. 7. 6. 위 새마을금고연합회 계좌로 10,000,000원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각 송금하였는바,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각 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취인의 금융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경우에도 수취인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지 않으면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바(대 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판결 등),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실질적으로 위 각 송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계좌 명의 도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원고로 하여금 피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명목으로 피고로 하여금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을 제시하며 피해금을 교부받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제 주지방법원 2020고단1915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가 위 각 금원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선택적으로, 피고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자로부터 수고비 등을 지급받는 등 위 범죄행위에 가담하였거나 혹은 적어도 이를

방조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각 송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 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53568등).

을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직접 가담하였거나 피고가 범죄자들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는 자신 명의 계좌 명의 도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을 제시하는 범죄자들에게 피해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자신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당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금원을 전달한 행위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또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심병직